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 -1112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공공시설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 추가(제12조)
  - 현행 조례상 누락된 의무감면 대상자 추가(참전유공자법, 고엽제법, 5.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의사장사법, 국군포로송환법)
- 이용시간 조정(제10조)
  - 시설 이용시간 :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(홍인동, 충무아트센터), 문의전화 : 3396-4622, FAX: 3396-8621, 전자우편 : khj0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이 한다. 다만,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신설)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시설 운영 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2. 시설 이용 시간 :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

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
2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8.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.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, 의사자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2. 「장애인 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1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15.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